

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하남시장(기획조정과)

제출일 : 2026. 3.

1. 제안이유

국민권익위원회 「8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」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근거 마련

2. 주요내용

가. 안 제20조제4항 및 제5항 삭제

나. 안 제20조2 :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 실시를 신설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유정수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·감독을 강화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.
- 검토 결과, 본 개정안은 수탁기관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. 다만, 안 제20조의2 제2항 중 “제1항의 따른”은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자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